

#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18호)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10. 8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3. 10. 9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3. 10. 17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 2. 개정사유

- 2003. 5. 9 시행된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우리군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의거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일부 개정함으로써 계획적 인력책정으로 낭비적 · 불요불급한 인력책정을 방지코자 함.

### 3. 주요골자

- 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43명을 증원함(안 제2조)

구 분	현 행	조 정	증 감
○. 총수	562명	605명	4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549명	591명	42명
2. 의회사무기구의정원	13명	14명	1명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 5. 9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지난 4년간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침해된 근무분위기를 일신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과 기능 중심의 경쟁력 있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자 고성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의거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은 타당할 것이라고 하였음.

-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이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인력책정은 없는지와 효율적인 고성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 5. 질의 및 답변

- 문 :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에 보면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다. 정원의 구체적 내역을 별표로 만들어서 조례로서 심사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답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6. 토 론 : 없음

## 7. 심사결과

- 2003. 10. 1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